

# 화성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시설 안내

- 시설 명: 화성서해마루 유스호스텔
- 위치: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관광로153번길 39
- 규모: 부지면적 14,580㎡, 연면적 13,814.85㎡ (객실 및 숙박정원: 103실/358명)
- 주요시설

구분	주요시설
루프탑	우드데크 등 서해안 조망 편의시설
지상 4층	객실(43실)(숙박인원: 144명) / 세탁실 / 휴게공간
지상 3층	객실(43실)(숙박인원: 144명) / 세탁실 / 휴게공간
지상 2층	객실(17실)(숙박인원: 70명) / 카페(145㎡, 준비중) / 스포츠체험공간(200㎡) 등
지상 1층	로비 / 안내데스크 / 북카페(121㎡) / 식당(356㎡, 준비중) / 대강당(459㎡) 및 회의실(60㎡) / 수영장(성인풀 445㎡, 아동풀 86㎡) / 자가취사장(57㎡) / 편의점(103㎡, 준비중)
지하 1층	지하주차장 / 샤워탈의실 / 세탁실 / 기계·전기실 * 주차대수: 총 109대(대형버스 주차구역 4대 포함)

※ 식당, 편의점, 카페 현재 운영자 모집 중

- 시설사진



□ **유스호스텔 사용료**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2] 2의2)

※ 계절·시기·요일, 시설 사용률 등을 고려해 50% 범위 내 사용료 가감 가능

○ **객실 사용료**

구분	면적	수	사용료(VAT 미포함/1박)	
			기준요금	시범운영 기간 할인요금(50%)
2인실	24㎡-31㎡	39실	90,000원	45,000원
4인실	일반객실	34㎡-40㎡	120,000원	60,000원
	장애인객실	49㎡		
6인실	50㎡-51㎡	11실	140,000원	70,000원
가족실	4인실(A)	36㎡-42㎡	140,000원	70,000원
	4인실(B)	57㎡-65㎡	170,000원	85,000원
	6인실	62㎡	180,000원	90,000원

○ **부대시설 사용료**

구분	면적	수	사용료(VAT 미포함)	
			4시간 이내	4시간 초과
대강당	459㎡	1실	1,200,000원	1,800,000원
회의실	60㎡	4실	250,000원	400,000원

※ (참고)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기준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3의2])

연 번	감 면 대 상	감 면 비 율	
		객실	부대시설
1	재난으로 인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히 사용하는 경우	100%	100%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공·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 목적 행사·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30%	100%
3	학교, 공공기관, 청소년단체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영리 목적 행사·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20%	20%
4	장애인	20%	-
5	국가보훈대상자	20%	-
6	다자녀가정의 구성원	20%	-
7	이용 인원 모두가 청소년인 경우	20%	20%
8	화성시민이 사용하는 경우	10%	10%
9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	100%

비고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시가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
  - 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 나.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대한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한교육기관을 말한다.
4.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6.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
7. “다자녀가정”이란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을 말한다.
8. 그 밖의 감면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기타사항란 1)부터 3)까지를 준용한다.